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153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 2020.4.8.) 취지에 맞게 공공분야 기금 사용용도의 세부 항목을 정비하였으며, 시행령에 따라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사용 용도에 추가함

## 2. 주요내용

- 가.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에 대한 세부항목 정비(안 제6조제1호)
- 나.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 조항 신설(안 제6조제2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나. 연락처 : 전화 02-3396-4483, 팩스 02-3396-9085

다. 전자우편 : hjy22@junggu.seoul.kr

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생활안전담당관)

마.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가.
  - 가. 재난 예방·대응·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 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
  -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구입·수당 및 경비
  -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
  -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중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비용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점검 및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서 사용한다.</p> <p><u>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의 제작</u></p> <p style="padding-left: 20px;"><u>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u></p>	<p>제6조(기금의 용도) ----- ----- ----- -----.</p> <p><u>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u></p> <p style="padding-left: 20px;"><u>가. 재난 예방·대응·원인 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u></p> <p style="padding-left: 20px;"><u>나.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및 홍보</u></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수당 및 경비</u></p> <p style="padding-left: 20px;"><u>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 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보강</u></p> <p style="padding-left: 20px;"><u>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u></p>

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단, 유지관리 제외)

사. 하천시설·배수관·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

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자. 정밀안전진단(또는 점검) 결과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철거

차.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3. 재난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특별시 중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점검 및 보수·보강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  
정보시설 등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  
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서울특별시  
중구 소유 또는 관리 시설에  
한함)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  
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  
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입  
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제설용 자재 구입(단,  
제설차량 구입, 습염식 제  
설시스템 설치, 시설관리  
공단 위탁관리비 제외) 및  
임차

라.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

수장비의 구입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진단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9.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